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화재보험 의무가입 구체적 범위 규정

- 2010년 3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공유건물·운수시설·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.
  -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될 경우 공유건물 2,776개, 지하철 533개, 다중이용업소 사용 건물 약 1,500개 ~ 1,800개의 신규 증가가 예상되어 총 약 4,800개 ~ 5,100개 증가가 추정됨.
  
-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,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기로 함.
  - 공유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인 건물이 포함되며, 운수시설의 경우는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,000m<sup>2</sup> 이상인 건물이 포함
  - 의무가입대상을 현행 일반음식점업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·영화상영관업·목욕장업 등을 추가하여 10개 업종으로 확대
    - 영화상영관업·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2,000m<sup>2</sup> 이상인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
    - 휴게음식점업·노래연습장업·PC방업·게임제공업의 경우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·단란주점업·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,000m<sup>2</sup> 이상인 건물이 포함
    - 다중이용업소는 아니나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
  -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과 같이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

(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, 금융위, 8/18)